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기 2016년 02월 0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4
포괄손익계산서 -----	5
자본변동표 -----	6
현금흐름표 -----	7
주석 -----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 표 이 사

徐 珍 錫

서 진



2018년 2월 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2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1 기

2016년 02월 05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준현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9층

(전 화) 02-6336-2900

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말	제 1(전)기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주석5,14,22,23,24>	5,342,716,313	5,172,095,145
Ⅱ. 대출채권 <주석6,22,23,24>	95,479,020	95,479,020
Ⅲ. 유형자산 <주석7>	141,160,811	55,021,964
Ⅳ. 무형자산 <주석8>	20,310,567	21,723,158
Ⅴ. 이연법인세자산 <주석19>	10,683,503	37,145,777
Ⅵ. 기타자산 <주석9,22,23,24,25>	395,662,125	106,757,482
자 산 총 계	6,006,012,339	5,488,222,546
부 채		
Ⅰ. 확정급여부채 <주석10>	-	66,899,994
Ⅱ. 당기법인세부채 <주석19>	41,200,272	75,546,658
Ⅲ. 기타부채 <주석11,22,23,24,25>	338,648,799	190,834,153
부 채 총 계	379,849,071	333,280,805
자 본		
Ⅰ. 자본금 <주석12>	5,000,000,000	5,000,000,000
Ⅱ.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석12>	(73,110,000)	(73,110,000)
Ⅲ. 이익잉여금 <주석12>	699,273,268	228,051,741
자 본 총 계	5,626,163,268	5,154,941,7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006,012,339	5,488,222,546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1. 영업수익	2,471,777,516	1,513,949,064
(1) 수수료수익 <주석15,25>	2,466,171,561	1,509,045,969
(2) 이자수익 <주석16>	5,605,955	4,903,095
2. 영업비용	1,888,741,568	1,246,957,322
(1) 판매비와관리비 <주석17,21>	1,888,696,101	1,246,957,322
(2) 기타영업비용	45,467	-
3. 영업이익	583,035,948	266,991,742
4. 영업외수익 <주석18>	-	10,000
5. 영업외비용 <주석18>	6,153,933	-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6,882,015	267,001,742
7. 법인세비용 <주석19>	105,660,488	38,950,001
8. 당기순이익	471,221,527	228,051,741
9. 기타포괄손익	-	-
10. 당기총포괄이익	471,221,527	228,051,741
11.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주석20>	471	228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6년 2월 5일(설립일)	5,000,000,000	(73,110,000)	-	4,926,890,0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228,051,741	228,051,741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5,000,000,000	(73,110,000)	228,051,741	5,154,941,741
2017년 1월 1일(당기초)	5,000,000,000	(73,110,000)	228,051,741	5,154,941,74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471,221,527	471,221,527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5,000,000,000	(73,110,000)	699,273,268	5,626,163,268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2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318,845,409		472,654,255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6,882,015		267,001,742	
2. 비현금항목의 조정	30,900,200		80,681,867	
이자수익	(5,605,955)		(4,903,095)	
감가상각비	24,384,164		14,929,336	
무형자산상각비	5,922,591		3,755,632	
퇴직급여	-		66,899,994	
유형자산처분손실	6,153,933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45,467		-	
3. 자산부채의 변동	(180,998,161)		120,616,671	
미수수익의 증감	(246,865,568)		(69,926,578)	
선급비용의 증감	(1,715,375)		(290,904)	
미지급금의 증감	4,515,822		16,423,363	
미지급비용의 증감	127,231,994		163,386,600	
예수금의 증감	2,734,960		11,024,190	
확정급여부채의 증감	(66,899,994)		-	
4. 이자수취액	5,605,955		4,903,095	
5. 법인세의 납부	(113,544,600)		(549,12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48,224,241)		(227,449,11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248,224,241)		(227,449,110)	
대여금의 증가	-		(95,479,020)	
유형자산의 취득	(94,877,981)		(69,951,300)	
유형자산의 처분	(8,512,560)		-	
무형자산의 취득	(4,510,000)		(25,478,790)	
보증금의 증가	(40,323,700)		(36,540,000)	
정기예금의 취득	(4,1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26,89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926,890,000	
자본금의 증가	-		4,926,89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		(3,929,378,832)		5,172,095,14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14>		5,172,095,145		-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주석14>		1,242,716,313		5,172,095,14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

1. 일반사항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 당사” 라 함)는 2016년 2월 5일 설립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249조의 3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 6월 1일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주주명	소유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주)메리츠금융지주	1,000,000 주	5,000,000	1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제 · 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 ·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 · 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사항은 기업의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외환차손익 등)을 포

합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개정사항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2-3 2014 - 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공시규정의 범위 구분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 중 일부)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2-3 수익인식

당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 수수료수익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 설정의뢰 및 지시를 하는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에 대하여 사전의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약정된 보수 금액 중 실현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보수 인출일 미도래분의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2 이자수익

상각 후 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2-4 법인세

2-4-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 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4-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 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당사는 더 이상의 미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일일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기여금은 초과기여금으로 인해 미래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최초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

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 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 변경될 경우, 당사는 드문상황의 경우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 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2-6-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하는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2-8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2-8-1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총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총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총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금융원가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2-8-2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2-9-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당사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2-9-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최초인식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0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추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4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 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각방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정액법	5년

2-1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소액현금과 보통예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성자산의 경우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금융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1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16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3-2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기금에 기여금을 출연함으로써 급여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의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 등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운영하였습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4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업무용건물과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업무용건물 내부시설의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3-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

를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83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5,832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당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109호에 따른 분류	K-IFRS 제1039호에 따른 금액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액
예치금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5,342,716	5,342,716
대출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	393,656	393,656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5,831,851	5,831,851

4-1-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1-4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되거나 출자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조기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효력이 발생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나 기업은 먼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법과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서 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6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개정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의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대해 전진 적용합니다. 기업은 그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여 재분류하거나 그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을 재평가합니다.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하며 그 사실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이 개정을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 연차개선 2014-2016

(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에 적용가능하지 않습니다.

(ii)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

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함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을 적용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서를 적용함에 있어 이 해석서에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ii)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제정사항은 당사의 현재회계정책과 일치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현금및예치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관	이자율	당기말
예치금 :			
보통예금	우리은행	0.10%	1,242,716
정기예금	국민은행	1.67%	4,100,000
합 계			5,342,71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관	이자율	전기말
예치금 :			
보통예금	우리은행	0.10%	5,172,095

6. 대출채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액	약정이자율	금액	약정이자율
임직원대여금	95,479	2.51%	95,479	2.51%

7. 유형자산

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집기비품	47,483	(2,502)	44,981	4,773	(864)	3,909
전산비품	73,346	(31,881)	41,465	65,178	(14,065)	51,113
임차점포시설물	57,286	(2,571)	54,715	-	-	-
합 계	178,115	(36,954)	141,161	69,951	(14,929)	55,022

7-2.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취득가액				
집기비품	4,773	51,223	(8,513)	47,483
전산비품	65,178	8,168	-	73,346
임차점포시설물	-	57,286	-	57,286
소 계	69,951	116,677	(8,513)	178,115
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	(864)	(3,997)	2,359	(2,502)
전산비품	(14,065)	(17,816)	-	(31,881)
임차점포시설물	-	(2,571)	-	(2,571)
소 계	(14,929)	(24,384)	2,359	(36,954)
합 계	55,022	92,293	(6,154)	141,161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취득가액				
집기비품	-	4,773	-	4,773
전산비품	-	65,178	-	65,178
임차점포시설물	-	-	-	-
소 계	-	69,951	-	69,951
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	-	(864)	-	(864)
전산비품	-	(14,065)	-	(14,065)
임차점포시설물	-	-	-	-
소 계	-	(14,929)	-	(14,929)
합 계	-	55,022	-	55,022

8. 무형자산

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9,989	(9,678)	20,311	25,479	(3,756)	21,723

8-2. 보고기간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21,723	4,510	(5,922)	20,311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상각비	기말
소프트웨어	-	25,479	(3,756)	21,723

9.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수수익	316,792	69,927
선급비용	2,006	290
보증금	76,864	36,540
합 계	395,662	106,757

10. 퇴직급여제도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퇴직급여	82,479	66,900

한편, 당사는 당기 중에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전기말에는 퇴직급여제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급여형에 따른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이 채택됨에 따라 퇴직급여 기여금을 납부하면서 전기말 확정급여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습니다.

11.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20,939	16,423
미지급비용	290,619	163,387
예수금	13,759	11,024
복구충당부채	13,332	-
합 계	338,649	190,834

12. 자본

1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주	8,000,000 주
1주의 금액	5,000원	5,000 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00,000주	1,000,000 주

12-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할인발행차금	(73,110)	(73,110)

12-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임의적립금		
대손준비금	827	-
미처분이익잉여금	698,446	228,051
합 계	699,273	228,051

12-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2(당기)		제 1(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98,446		228,05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7,224		-	
당기순이익	471,222		228,051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234)		(827)
대손준비금	(1,234)		(827)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97,212		227,224

상기 이익잉여금 처분의 당기 처분예정일은 2018년 3월 16일이며, 전기 처분확정일은 2017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13. 대손준비금

1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초 적립액	827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예정금액	1,234	827
대손준비금 기말 적립액	2,061	827

13-2. 보고기간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당기순이익	471,222	228,052
대손준비금 전입액	(1,234)	(827)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469,988	227,225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	470원	227원

14. 현금흐름표

1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현금및예치금	5,342,716	5,172,095
예치금	(4,100,000)	-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1,242,716	5,172,095

14-2. 보고기간 중 현금유출입이 없는 거래내용은 없습니다.

15. 수수료수익

보고기간 중 수수료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투자신탁위탁자보수	2,466,172	1,509,046

16. 이자수익

보고기간 중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예치금	3,505	3,740
대출채권	2,101	1,163
합 계	5,606	4,903

17. 판매비와관리비

보고기간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1,173,690	866,735
퇴직급여	82,479	66,900
복리후생비	94,196	53,175
전산운영비	41,693	25,134
임차료	94,655	69,307
지급수수료	129,419	3,898
접대비	38,929	26,874
광고선전비	470	1,980
감가상각비	24,384	14,929
연수비	1,052	-
무형자산상각비	5,923	3,756
세금과공과금	26,412	11,318
업무위탁수수료	31,097	15,677
여비교통비	121,032	69,256
차량유지비	16,369	12,347
소모품비	4,470	3,641

구 분	당기	전기
보험료	579	294
행사비	292	545
기타	1,555	1,191
합 계	1,888,696	1,246,957

18. 영업외수익 및 비용

보고기간 중 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영업외수익:		
기타	-	10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6,154	-

19. 법인세

19-1. 당사는 과세소득 2억원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012년 이후 과세소득 2억부터 200억까지에 대하여는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2% 적용)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민세율은 법인세액의 10%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의 구성:		
법인세부담액	79,198	76,096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6,462	(37,14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총 법인세비용	105,660	38,950

19-2. 보고기간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A)	576,882	267,002
적용세율(당기 18.19%)에 따른 법인세	104,914	36,740
조정사항:		
이월결손금 공제	-	-
비공제비용	746	376
기타(세율차이 등)	-	1,834
소 계	746	2,210
법인세비용(B)	105,660	38,950
유효세율(B/A)	18.32%	14.59%

19-3. 보고기간 중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감 소	당 기 말
I. 차감할 일시적차이				
퇴직급여부채	66,900	-	66,900	-
미지급비용	101,944	-	54,167	47,777
복구충당부채	-	13,332	-	13,332
임차점포시설물감가상각누계액	-	738	-	738
소 계	168,844	14,070	121,067	61,847
II. 가산할 일시적차이				
임차점포시설물	-	(13,286)	-	(13,286)
소 계	-	(13,286)	-	(13,286)
합 계	168,844	784	121,067	48,561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대상 금액	168,844	784	121,067	48,561
세 율	22%			22%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37,146			10,684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감 소	당 기 말
I. 차감할 일시적차이				
퇴직급여부채	-	66,900	-	66,900
미지급비용	-	101,944	-	101,944
합 계	-	168,844	-	168,844
이연법인세자산 인식대상 금액	-	168,844	-	168,844
세 율	-			22%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			37,146

(*) 당사는 향후 예상되는 과세소득의 한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유통 보통주식수
기초	1,000,000	365/365	1,000,000
유상증자	-	-	-
기말	1,000,000		1,000,000

<전기>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유통 보통주식수
기초	-	-	-
유상증자	1,000,000	331/331	1,000,000
기말	1,000,000		1,000,000

20-2. 기본주당이익

당기 중 기본주당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순이익	471,221,527	228,051,74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00주	1,000,000주
기본주당순이익	471	228

21. 특수관계자 거래

2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지분율	비 고
지배기업	(주)메리츠금융지주	100%	
기타특수관계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자산운용(주)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금융서비스(주)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주식]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스마트성복제일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스마트성복제이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엠제이제이제일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엠제이제이제이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엠신곡제일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엠케이에이치제일차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시흥제일차주식회사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종속기업
	PT.MERITZ KORINDO INSURANCE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사모증권투자신탁6호[주식]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C(공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증권[채권형]자투자신탁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하이일드플러스 공모주사모신탁3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하이일드플러스 공모주사모신탁4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현대하이일드 사모신탁1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사모증권투자신탁1호 C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속기업

구 분	특수관계자명	지분율	비 고
	이스트스프링하이일드2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칸서스하이일드분리과세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에이치알다빈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신탁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피데스정프업공모주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썬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혼합자산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제이에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타이거 0212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트리니티 유니콘 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플랫폼파트너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유리치 스마트 공모주 사모 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마운틴푸른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2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3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비전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종속기업
	메리츠캐피탈(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메리츠오토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메리츠오토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메리츠오토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메리츠오토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메리츠오토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유진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증권2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유진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증권7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유리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키움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투자신탁제2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코레이트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투자신탁4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스팩스분리과세하이일드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BNK공모주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사모1[채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에셋원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마일스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캡스톤사모MBS부동산투자신탁2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캡스톤사모MBS부동산투자신탁3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라임공모주전문투자형펀드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모펀드)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펀드2호C-(자펀드)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아름드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블루텍공모주멀티펀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헤이스팅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종속기업

구 분	특수관계자명	지분율	비 고
	브로스PO사모투자신탁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휴먼공모주전문투자신탁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스마트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캡스톤EU전문투자형사모신탁제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CSBER01 HOLDCo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CSBER01 PROPCo A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CSBER01 PROPCo B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뉴코먼스제일차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해운대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해운대프로젝트제이차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산본마스터프라자제일차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동대문에이치제일차(유)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하이스트오션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충주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미아제이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미아제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미아제사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두정에스지(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미아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위베스트청담제일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엔에이치엠에이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역삼트리니티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스마트청담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용인성복제철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비케이에이지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챔스필드오کید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티에이치제일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이치소사이어티엠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원주에스지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디엠에이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마이베스트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신흥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우동제일차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베이스제일차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수정 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디에스씨제일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한강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과천제사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엠케이체육차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에스디제일차유동화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구 분	특수관계자명	지분율	비 고
	엠에스디제이차유동화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청담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송도엠원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해피트리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클라우드필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위베스트다산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그레이스영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스마트미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에스유니티제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호평알프하임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호평알프하임제사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현곡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혁신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가산디프로젝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마이힐스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송도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대현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제피루스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중동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안양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다산 주식회사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어드바이저스(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아이에프디제이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엘티명동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더네이처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목현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베스트퀸즈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이제이홀딩스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나이스동탄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에스디베이제일차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씨에프에이치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엠스케어가산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에스에이치제일차(주)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RREEF SPEZIAL INEST GmbH 유가증권신탁계약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G 뉴점프 단기 채권투자신탁 1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아시아프론티어사모[주식]	-	메리츠자산운용(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2	-	메리츠자산운용(주)의 종속기업
	메리츠코리아인게이지먼트전문사모[주식]C	-	메리츠자산운용(주)의 종속기업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2	-	메리츠자산운용(주)의 종속기업

21-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주)메리츠금융지주	-	1,514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49,816	-	15,514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55,440	-	58,212
합 계	-	106,770	-	73,726

21-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	36,540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76,364	-	-	-
합 계	76,364	-	36,540	-

21-4. 보고기간 중 주요 경영진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합 계
임원에 대한 보상	241,269	40,000	281,269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합 계
임원에 대한 보상	279,064	33,333	312,397

22. 위험관리

당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건전성 유지, 고객의 이익 보호 및 회사 경영의 안정적인 성장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조직으로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 고유재산의 위험관리

당사는 고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두고 고유재산의 운용과 위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유재산 운용관련 리스크관리방안 및 한도 설정
- 리스크 관리 및 운용 관련 사규 또는 지침의 제·개정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방안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고유재산운용 담당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 고유재산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며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당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분석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2-1-1.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은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운용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1-2.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등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예치금	5,342,716	5,172,095
대출채권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393,656	106,467
합 계	5,831,851	5,374,041

<대출채권 관련 연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95,479	95,479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
손상된 대출채권	-	-
소 계	95,479	95,479
현재가치할인차금	-	-
대손충당금	-	-
합 계	95,479	95,479

22-1-3.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 주요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에 예치 등 여유자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당시 금리에측을 통해 예치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과정과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식, 측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두고 고유재산의 운용과 위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2-1-4. 최소영업자본액관리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은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최소영업자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최소영업자본액	1,721,030,927	1,570,545,515

22-2.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당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과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식, 측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두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위험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 리스크의 관리방안 및 한도설정
- 집합투자재산 및 운용역의 성과평가방안
- 리스크관리 및 운용관련 사규 또는 지침의 제·개정
-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방안
- 회사의 위기관리대책 및 대응방안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독립적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인식, 측정, 평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된 위험지표별 위험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담당부서 및 운용담당자에 시정 조치 요구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2-2-1.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은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환매규모, 현금성자산의 보유비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	합계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20,939	-	20,939
미지급비용	290,619	-	290,619
합 계	311,558	-	311,558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년이내	1년초과	합계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16,423	-	16,423
미지급비용	163,387	-	163,387
합 계	179,810	-	179,810

22-2-2.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채권 Universe 를 만들어 Universe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2-2-3.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 주요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의미합니다. 펀드별 위험지표 및 한도는 펀드가 추구하는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표준편차, 트레이킹에러, Beta, 채권 듀레이션 및 환헤지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3.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매도가능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5,342,716	5,342,716
대출채권	-	-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	-	393,656	393,656
합 계	-	-	5,831,851	5,831,851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311,558	311,558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매도가능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5,172,095	5,172,095

구 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매도가능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합 계
대출채권	-	-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	-	106,467	106,467
합 계	-	-	5,374,041	5,374,041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179,810	179,810

2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5,342,716	5,342,716	5,172,095	5,172,095
대출채권	95,479	95,479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393,656	393,656	106,467	106,467
합 계	5,831,851	5,831,851	5,374,041	5,374,041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311,558	311,558	179,810	179,810

24-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4-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5,342,716	-	5,342,716
대출채권(*)	-	-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	-	393,656	393,656
합 계	-	5,342,716	489,135	5,831,851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311,558	311,558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 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5,172,095	-	5,172,095
대출채권(*)	-	-	95,479	95,479
기타금융자산(*)	-	-	106,467	106,467
합 계	-	5,172,095	201,946	5,374,041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179,810	179,810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5. 신탁자산

25-1. 보고기간 중 신탁계정과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2,466,172	1,509,046
합 계	2,466,172	1,509,046

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탁계정과의 주요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수수익	자산관리수수료	-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316,792	69,927
합 계		316,792	69,927

26.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